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21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3. 16.

발 의 자 : 황주홍 · 이찬열 · 박 정
김관영 · 이동섭 · 최도자
주승용 · 김동철 · 박준영
김중로 · 권은희 · 어기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될 수밖에 없음.

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
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
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
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(안 제
84조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,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4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84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,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</u>